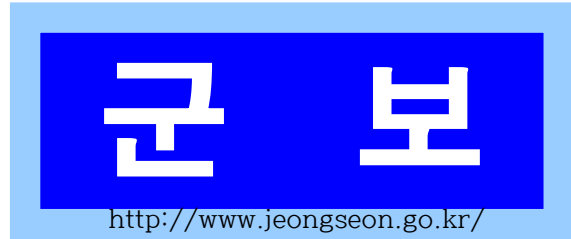
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



제265호 2012. 4. 10. (화)

【조 례】

- 정선군조례 제228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..... 1
- 정선군조례 제2282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... 8
- 정선군조례 제2283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..... 11
- 정선군조례 제2284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..... 14

조 례

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정 선 군 수

2012. 4. 10.

정선군 조례 제2281호

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

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67명”을 “568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“556명”을 “557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 기존 기능10급은 2012.5.23.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되, 2012.5.24.부터는 기능10급을 폐지한다.

②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 율	1% 이내	6% 이내	<u>27.0% 이내</u>	33% 이내	<u>24% 이내</u>	9.0% 이상

비고 : 읍·면·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2. 기능직공무원

구 분	6급	7급	8급	9급
비 율	5% 이내	16.5% 이내	<u>14% 이내</u>	<u>64.5% 이내</u>

비고 : 읍·면·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3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3% 이내	97% 이상	<u>10% 이내</u>	<u>90% 이내</u>

비고 : 읍·면·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4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상당 이상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<u>0% 이내</u>	50% 이내	<u>50% 이내</u>	<u>0% 이내</u>	<u>0% 이상</u>

비고 : 읍·면·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

구 분	총 계	의 회	본 청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<u>568</u>	—				
정무직 계	1	—				
일반직 계	<u>451</u>	—				
3급	—					
4급	3		3			
5급	24	2	10	2	1	9
6급이하 계	<u>424</u>	—				
별정직 계	<u>2</u>	—				
5급 상당	0	—				
6급 상당 이하 계	<u>2</u>	—				
연구직 계	<u>4</u>	—				
연구관	0	—				
연구사	<u>4</u>	—				
지도직 계	<u>17</u>	—				
지도관	2			2		
지도사	<u>15</u>	—				
기능직 계	93	—		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정선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567명</u> 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56명</u> 2. (생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568명</u> --,----- --. 1.----- : <u>557명</u> 2. (현행과 같음)

개정 전·후 대비표(별표)

[별표 2]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 율	1% 이내	6% 이내	<u>27.0%(27.5%) 이내</u>	33% 이내	<u>24%(23.5%) 이내</u>	9.0% 이상

비고 : 읍·면·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 ()안은 개정 전

2. 기능직공무원

구 분	6급	7급	8급	9급
비 율	5% 이내	16.5%이내	<u>14%(12%) 이내</u>	<u>64.5%(33.5%) 이내</u>

비고 : 읍·면·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3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 : 변동없음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3% 이내	97% 이상	<u>10%(8%) 이내</u>	<u>90%(92%) 이내</u>

비고 : 읍·면·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4. 별정직공무원 : 변동없음

구 분	5급상당 이상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<u>0%(7%) 이내</u>	50% 이내	<u>50%(29%) 이내</u>	<u>0%(12%)이내</u>	<u>0%(2%) 이상</u>

비고 : 읍·면·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

구 분	총 계	의 회	본 청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568(567)	—				
정무직 계	1	—				
일반직 계	451(440)	—				
3급	—					
4급	3		3			
5급	24	2	10	2	1	9
6급이하 계	424(413)	—				
별정직 계	2(12)	—				
5급 상당	0	—				
6급 상당 이하 계	2(12)	—				
연구직 계	4(2)	—				
연구관	0	—				
연구사	4(2)	—				
지도직 계	17(19)	—				
지도관	2			2		
지도사	15(17)	—				
기능직 계	93	—				

개 정 이 유

- 보건진료원(별정직)의 일반직 전환 및 가축질병 방역인력 증원 등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- 정원의 총수 : 568명(증 1명)
 - 집행기관 : 557명(증 1명)
 - 의 회 : 11명(현행과 같음)
-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(별표 2)
 - 일반직 : 6급 27%(△0.5%), 8급 24.0%(증 0.5%)
 - 기능직 : 8급 14%(증 2%), 9급 64.5%(증31%), 10급 0%(△33.5%)
 - 연구·지도직 : 지도관 10%(증2%), 지도사 90%(△2%)
 - 별정직 : 5급상당 0%(△7%), 7급상당 50%(증21%),
8급상당 0%(△12%), 9급상당 0%(△2%)
-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조정(별표 3)
 - 일반직 : 보건진료6급 증2명, 보건진료7급 증4, 보건진료8급 증4,
사회복지9급 △1명, 사회복지7급 증1명, 농업9급 증1명
 - 연구·지도직 : 농촌지도사 △2명, 농업연구사 증2명
 - 별정직 : 별정6급 △10명

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정 선 군 수

2012. 4. 10.

정선군 조례 제2282호

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하며”를 “직무상의 지시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,”로 하고, “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”을 “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복무)① (생략) ② 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<u>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</u> 준수하여야 한다. ③~④ (생략)	제3조(복무)① (현행과 같음) ② 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<u>직무상의 지시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</u> 준수하여야 한다. ③~④ (현행과 같음)

개 정 이 유

-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 본문 중 상명하복의 권위적인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- 조례 본문 중 상명하복의 권위적인 내용 개정(제3조제2항)
 - － “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”를 “직무상의 지시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”로 개정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관련 조문 개정(제3조제2항)
 - － “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”을 “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”으로 개정

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정 선 군 수

2012. 4. 10.

정선군 조례 제2283호

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

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여자공무원”을 “여성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,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특별휴가) ① (생략)	제23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임신중의 <u>여자공무원</u> 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.	② ----- <u>여성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-.
③ <u>여자공무원</u> 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. 다만,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	③ <u>여성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<u>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</u> 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.	④ <u>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</u> 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, <u>임신공무원</u> 은 <u>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</u> 을 받을 수 있다.

개 정 이 유

-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, 출산(임신) 여성공무원에게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 및 출산장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함(제23조)
- 임신 여성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부여(제23조제4항)
 - 종전 만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대하여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던 것을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확대 적용

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정 선 군 수

2012. 4. 10.

정선군 조례 제2284호

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

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제2호란 숙박비 “30,000원”을 “4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개 정 이 유

- 「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」의 숙박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- 국내여비지급표의 숙박비 개정(별표 1)

(단위 : 원)

구 분	현 행	변 경
제2호	30,000	40,000